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방법·신청 절차 및 업무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참가자 모집”을 “시작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건별신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변경사유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에서 신고서 등 각종 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방법)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연안안전 교육: 교육 참가자의 연령,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이론 및 실습 등

2. 연안안전 홍보: 정보통신매체, 현수막,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활용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① 제13조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해양경찰관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

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 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 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알려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연안안전 교육 일시·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 보고
4. 계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장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제3호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각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 가. 일반형 체험활동: 해양경찰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이 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 다. 수중형 체험활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 가. 수상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나. 수중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다. 일반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 1) 비상구조선(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탑승정원이 연안 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는 것
-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는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2) 구명조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는 것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는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1)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2)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는 것

3)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는 것

비 고

1. 안전장비는 연안체험활동 중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3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체험활동	체험활동 유형: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활동기간 : 부터 까지	
	주요 내용	활동인원	
		활동장소	
		안전관리요원 인원	
		비상구조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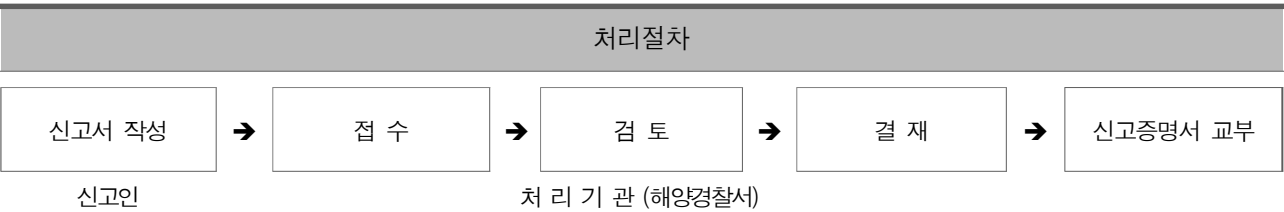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체험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계획) 7일 (변경) 3일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체험활동	체험활동 유형: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활동기간 : 부터 까지	
	주요 내용	일일 최대 수용인원	
		활동 장소	
		일일 최대 안전관리요원 인원	
		일일 최대 비상구조선 현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별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graph LR
    A[신고서 작성  
신고인] --> B[접수]
    B --> C[검토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C --> D[결재]
    D --> E[신고증명서 교부]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u>수립하여야</u> 한다.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 ----- <u>수립해야</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u>설치하여야</u>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u>공고하여야</u> 한다.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 ----- ----- ----- ----- ----- ----- ----- ----- ----- <u>설치해야</u> ----- ----- -- <u>공고해야</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1
조제3항-----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

----- 신고서-----
----- 서류
----- 시작일 -----

1. 2. (현행과 같음)

3. -----

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영 제11조제3항

4. (현행과 같음)

②
신고서

서류

.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 설>

----- 건별신고서-----

-- 제출해야 한다.

③ -----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변경사유서 -----

서류-----

-- 제출해야 한다.

④ -----

-- 작성·관리해야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에서 신고서 등 각종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
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
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
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
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

---- 교부해야 -----.

② -----

----- 이행해야 --

---- 제출해야 -----.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방법)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연안안전 교육: 교육 참가자
의 연령,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이론 및 실습 등

2. 연안안전 홍보: 정보통신매
체, 현수막, 간행물 등을 이용
하거나 「방송법」 제73조제4
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 활용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① 제13조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
체 등은 해양경찰관서(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1. 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 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
자 연령대

<신 설>

3. 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알려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연안안전 교육 일시·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 보고
4. 계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

<u>제13조</u> (생 략)	<u>요한 사항</u> <u>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장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u> <u>제16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	---